제982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(신설) ○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신설 –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–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을 통해 생산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어업인 –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연간 60일 이상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–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에 관한 사업 및 활동실적이 있는 어업법인 ▶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▶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▶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5조의2	1.비중요
2	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주민협의체 위원 구성 기준(강화) ○ 주민협의체 위원 구성 기준 제시 ▶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5조	1.비중요
3	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조합설립 동의요건의 예외(신설) ○ 정비구역 지정 등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가 발생하여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동별 동의요건을 1/3로 완화 적용하되, 실제 영업행위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에서 제외 ▶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	
4	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디지털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(신설) ○ 디지털의료제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및 운영 절차 등 ▶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전체	1.비중요
5	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(신설) ○ 수수료 및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과 방법 및 절차 등 마련 ▶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	1.비중요
6	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(문화체육관광부)	1.관광단지의 지정 등 면적기준(신설) ○ 관광단지의 지정 등 면적기준 규정 -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의 기준은 총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면적, 공공편의시설과 관광숙박시설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함 ▶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7	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(소방청)	1.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(강화) ㅇ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강화 – 패킹조립상태 검사(제4조제22호) – 최소사용온도범위 규정(제4조제23호) – 칫수공차 KS 규격 적용(제4조제24호) – 예비전원 성능시험(제5조제7호가목) – 방출구 재질 명시(제11조제1항) – 소화약제 기밀시험(제12조제2항) – 소화약제 저장용기 내부용적(제12조의2) – 작동장치 작동 문구 명확화(제14조) – 소화약제 제품검사 합격품 사용(제15조제1항) – 이산화탄소 순도(제15조제2항) – 외함 부식 시험(제16조제2항) – 도료밀착성 시험(제16조제3항) – 난연성 시험(제20조의2) – 설계방호체적 산정(제20조의3) – 명판시험(제21조제2항) ▶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▶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, 제5조, 제11조, 제12조, 제12조의2, 제14조, 제15조, 제16조, 제20조의2, 제20조의3, 제21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8	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(고용노동부)	1.폭염작업 정의 및 체감온도 측정(강화) ㅇ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체감온도가 31℃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이라고 정의 ㅇ 체감온도는 기상법에 따른 체감온도로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주된 작업장소의 바닥 면으로부터 약 1.2~1.5미터 높이에서 측정, 체감온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음 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 2.실내 폭염작업시 온·습도 조절 등 의무(강화) ㅇ 실내 폭염 작업 시 ①냉방·통풍을 위한 온·습도 조절장치 설치, ②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, ③적절한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조치(단, ① 또는 ②의 조치에도 폭염작업 계속 시 ③ 조치) 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 3.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에 대한 조치(강화) ㅇ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·습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 상시 비치 ㅇ 폭염·고열작업 시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 방법, 응급조치 요령 등 주지	1.중요 2.중요 3.중요 4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ㅇ 폭염작업 시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· 보관 ㅇ 폭염 · 고열 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 의심 시 소방관서 등에 신고 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 4.옥외 폭염작업시 건강장해 예방조치(강화) ㅇ 옥외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①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, ②적절한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조치(단, ①의 조치에도 폭염작업 계속시 ② 조치) ㅇ 체감온도 33℃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(원칙)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부여 – (예외) 연속공정 등 작업 성질상 휴식시간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→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 · 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 · 착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시 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	